

영등포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9호로 2011년 4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정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 조직 운영과 정원 관리를 위한 직군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일부 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채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일부 직급 통합(안 제3조 별표 2)
- 나. 승진이 정채되어 있는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상향(안 제3조 별표 2)
- 다.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5명 증원, 기능직 정원 13명 및 별정직 정원 2명 감원(안 제4조 별표 3)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 1,274명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정원의 관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및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9급과 10급 및 별정직 8급상당과 9급상당을 통합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변경하여 2011. 5월 현재 기능직 공무원 현원 총 253명 중 6급 11명 4.3%, 7급 40명 15.8%, 8급 177명

70%, 9급 25명 9.9%로 8급 이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승진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음.

- 안 제4조 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13명과 별정직 정원 2명 감원한 것은 소멸 정원인 기능직 중 지도직등의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되는 기능직공무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였음.
- 위 개정조례안은 6급이하의 승진적체로 인한 근속승진등에 따른 증원과 소멸되는 기능직등의 감소분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날로 증가하는 복지·보건·기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업무의 합리적 배분과 직무의 전문화 및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며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